#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25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박 정·김정호·허 영

소병훈 · 안호영 · 박용갑

유후덕 · 송옥주 · 김태선

김주영 · 허성무 · 이학영

어기구 · 강유정 의원

(14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 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경영판단상 상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 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정상화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손해배상 청구의 취하)이 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는 경영상의 판단에따라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조의2(손해배상 청구의 취하)
	이 법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쟁
	의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는 경
	영상의 판단에 따라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
	<u>할 수 있다.</u>